

수원지방법원 2019. 2. 14 선고 2018가단13925 판결 [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]

전 문

원고(선정 당사자)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12. 20

판결선 고 2019. 2. 1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오산시 C 임야 5,64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기) 부분 축사 14㎡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주택 30㎡, 같은 도면표시 10, 11, 12, 13,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디 부분 주택 37㎡ 를 각철거하고,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(선정자) 및 선정자들(이하 '원고 등'이라고 한다)은 오산시 C 임야 5,644㎡ 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의 공유자들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n) 부분 축사 14㎡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^) 부분 주택 30㎡, 같은 도면 표시 10, 11, 12, 13,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l) 부분 주택 37㎡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건물 등'이라고 한다)가 있고, 이 사건 건물 등은 모두 미등기 무허가 상태이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주택을 D으로부터 매수하고 축사를 설치하였으며,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,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재산세,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하여 왔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,한국국토정보공사 오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있는 지위에 있으므로,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각철거하고,그 점유 부분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 부분'이라고 한다)를 인도할 의무가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주택을 D으로부터 2002. 11. 5.경 매수하여 평온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,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D이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(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시기부터 계산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지도 않았다)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.

판사 김은경

별지